

##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11. 25.  
행정복지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: 2020. 11. 19.
- 제출자: 칠곡군수
- 회부일자: 2020. 11. 20. 회부
- 상정일자: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 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(2020. 11. 25. 상정·심사·의결)

### 2. 제출설명의 요지

- 제출설명자: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
- 제출이유  
석적체육공원 정비공사 준공에 따라 축구장 사용료 조항을 삽입하고자 함.
- 주요내용  
석적체육공원 축구장 사용료 조항 추가 (별표)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지영)

- 「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 
석적체육공원 정비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석적체육공원(축구장) 사용료 조항을 신설하여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
-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특이사항 없음

6. 소수의견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